책임자 승인	

연번 B200118-2

석면비산 측정 결과 보고서

경기도 가평군 양방가루재길 76 (방일초등학교)

주식회사 더큰

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6-2 102호 (금곡동)

E-mail : thekeun213@naver.com

Tel : 031-591-0808/ Fax : 031-629-6108

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

제출인	상호(대표자) ㈜구양건설 구현석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98 (남산면) (전화번호 :)	
건축물	건물명 방일초등학교 급식실	위치 경기도 가평군 양방가루재길 76 (방일초등학교)
	연면적(㎡) ㎡	작업기간 2020년 01월 18일 (1)일간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㎥)] 267.41㎡ (필요시 별지 첨부)	
측정 기관	상호(대표자) 주식회사 더큰 (김학배)	사업자등록번호 213-86-41862
	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6-2 102호 (금곡동)	
	측정자/분석자 (주선희,송영희)	
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별첨1						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별첨2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<별첨1>

*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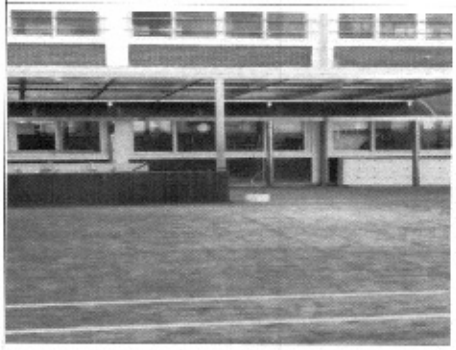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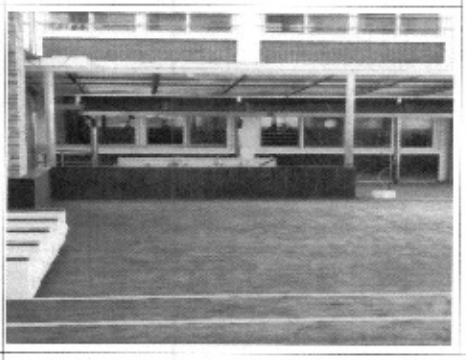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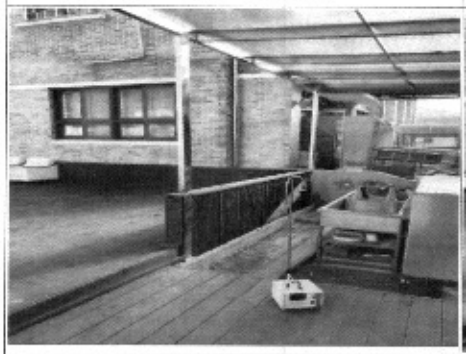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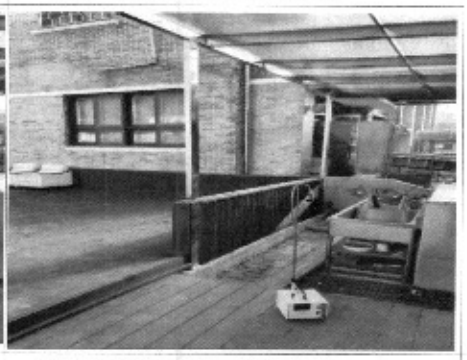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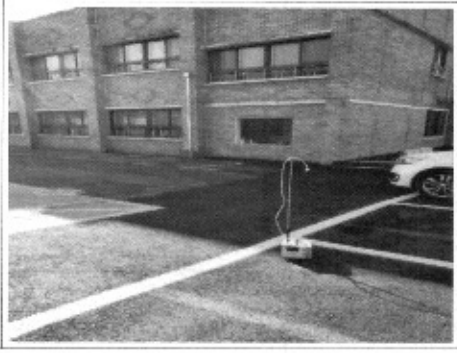
2020년 01월 18일

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측정 결과	#1	부지경계선1	LX40A/1	10.5	2020.01.18	0.000	백석면
	#2	부지경계선2	LX40A/1	10.7	2020.01.18	0.001	백석면
	#3	부지경계선3	LX40A/1	10.6	2020.01.18	0.000	백석면
	#4	부지경계선4	LX40A/1	10.6	2020.01.18	0.001	백석면
	#5	위생설비	LX40A/1	10.6	2020.01.18	0.003	백석면
	#6	음압기배출구1	LX40A/1	10.5	2020.01.18	0.001	백석면
	#7	음압기배출구2	LX40A/1	10.7	2020.01.18	0.002	백석면
	#8	음압기배출구3	LX40A/1	10.7	2020.01.18	0.001	백석면
	#9	폐기물 반출	LX40A/1	10.7	2020.01.18	0.003	백석면

<별첨2>

*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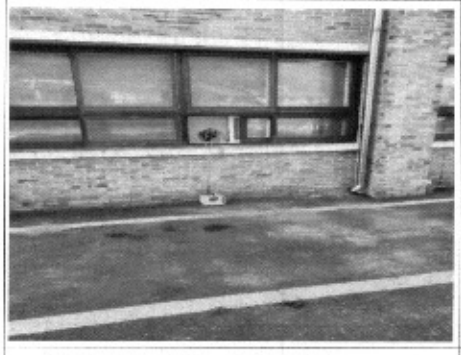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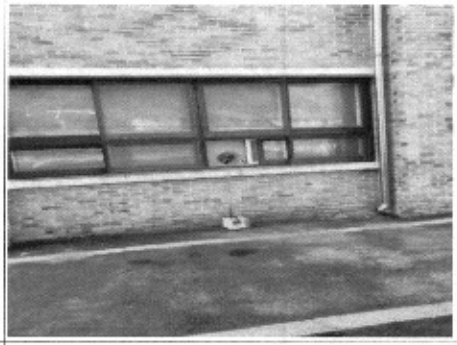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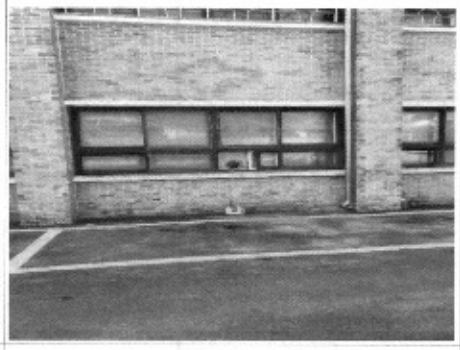
2020년 01월 18일

측정지점	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1	부지경계선 1	측정 시작 시간 : 1:00 PM 	측정 종료 시간 : 5:00 PM 	
#2	부지경계선 2	측정 시작 시간 : 1:00 PM 	측정 종료 시간 : 5:00 PM 	
#3	부지경계선 3	측정 시작 시간 : 1:00 PM 	측정 종료 시간 : 5:00 PM 	
#4	부지경계선 4	측정 시작 시간 : 1:00 PM 	측정 종료 시간 : 5:00 PM 	

<별첨2>

*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사진

2020년 01월 18일

측정지점	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5	위생설비	측정 시작 시간 : 1:20 PM 	측정 종료 시간 : 2:00 PM 	
#6	음압기배출구1	측정 시작 시간 : 1:20 PM 	측정 종료 시간 : 2:00 PM 	
#7	음압기배출구2	측정 시작 시간 : 1:20 PM 	측정 종료 시간 : 2:00 PM 	
#8	음압기배출구3	측정 시작 시간 : 1:20 PM 	측정 종료 시간 : 2:00 PM 	

<별첨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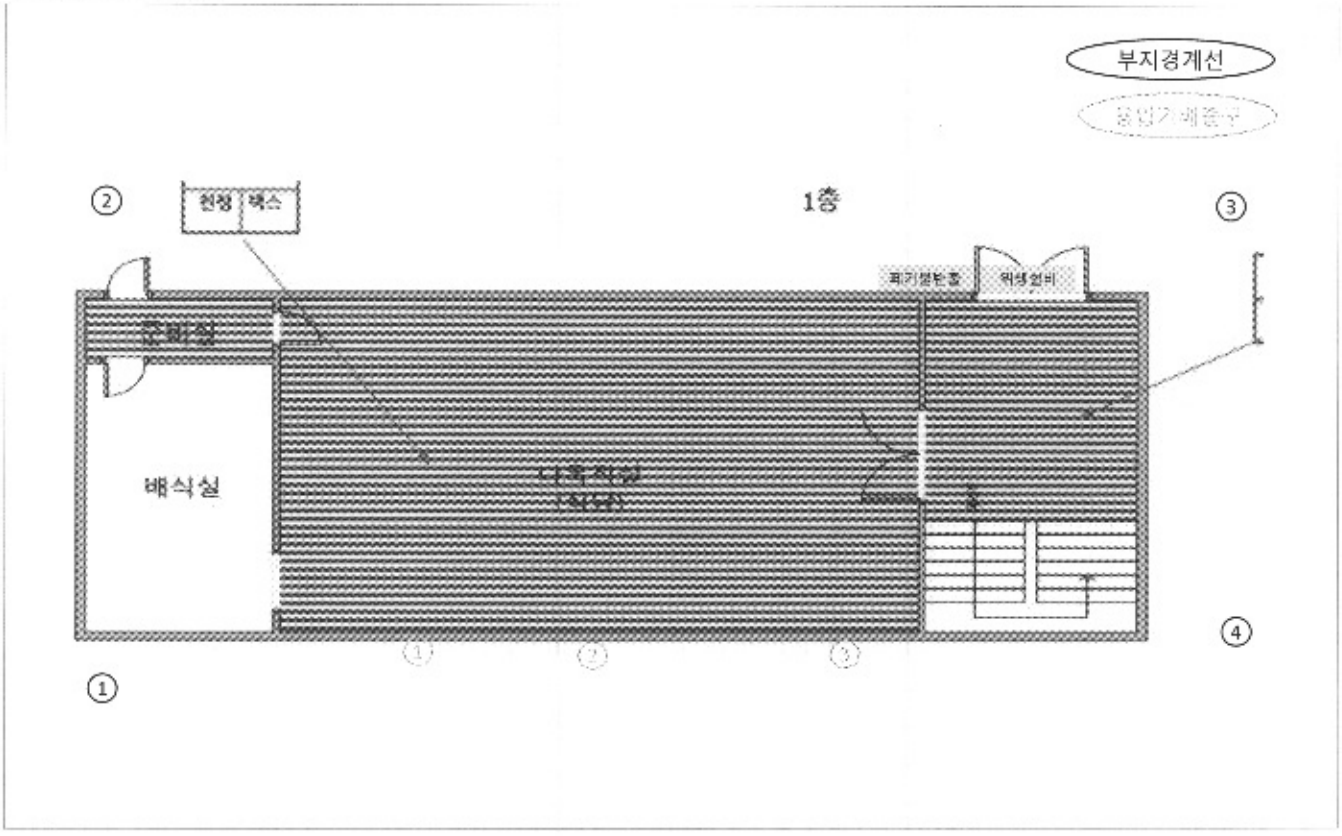
*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사진

2020년 01월 18일

측정지점	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#9	폐기물 반출	측정 시작 시간 : 1:20 PM 	측정 종료 시간 : 2:00 PM 	

*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도면

1. 측정위치도(측정장소)



책임자 승인	

연번 C200118-2

석면농도 측정 결과 보고서

경기도 가평군 양방가루재길 76 (방일초등학교)

주식회사 더큰

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6-2 102호 (금곡동)

E-mail : thekeun213@naver.com

Tel : 031-591-0808/ Fax : 031-629-6108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의9서식]

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	강원-20200003	
신고현장	현장명 (공사명.작업명)	방일초등학교 급식실 천정 석면텍스 철거공사
	소재지	경기도 가평군 양방가루재길 76 (방일초등학교)
	전화번호	
신 고 인	석면해체·제거업자명(상호)	㈜구양건설
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제3337호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신고인(석면해체·제거업자) ㈜구양건설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의10서식]

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연번 C200118-2

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 (석면해체.제거업자)	현장명 (공사명.작업명)	방일초등학교 급식실 천정 석면텍스 철거공사
	현장소재지	경기도 가평군 양방가루재길 76 (방일초등학교)
	석면해체.제거작업신고번호	김원-20200003
	업자명(상호)	㈜구양건설
	전화번호	
	대표자	구현석

2. 측정기간 2020년 01월 18일 ~ 2020년 01월 18일 (1 일간)

3. 측정자(분석자포함)

성 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주·	대기환경기사	01203120370A	측정자
송'	산업위생관리기사	082012303581	분석자
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개/㎖)	초과여부

<별첨 >
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<별첨 1>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식회사 더큰

석면해체 · 제거업자 귀하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'(재활용품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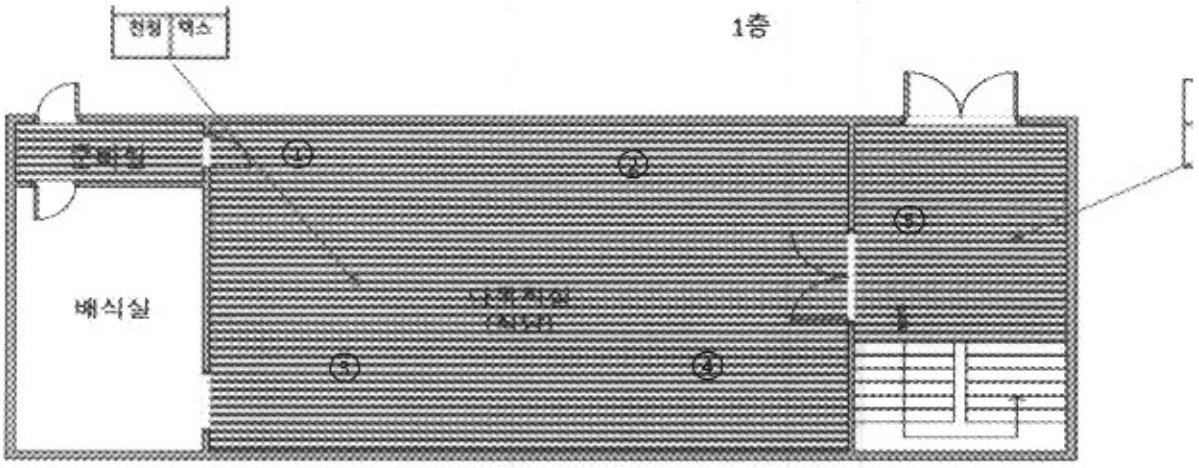
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ℓ/min)	측정농도(개/㎖)	초과여부
#1	100	10.09	0.002	노출기준 미만
#2	100	10.23	0.000	노출기준 미만
#3	100	10.09	0.002	노출기준 미만
#4	100	10.18	0.001	노출기준 미만
#5	100	10.12	0.003	노출기준 미만

<별첨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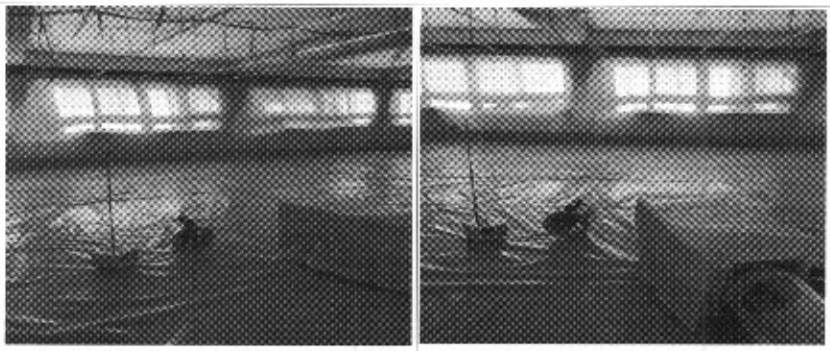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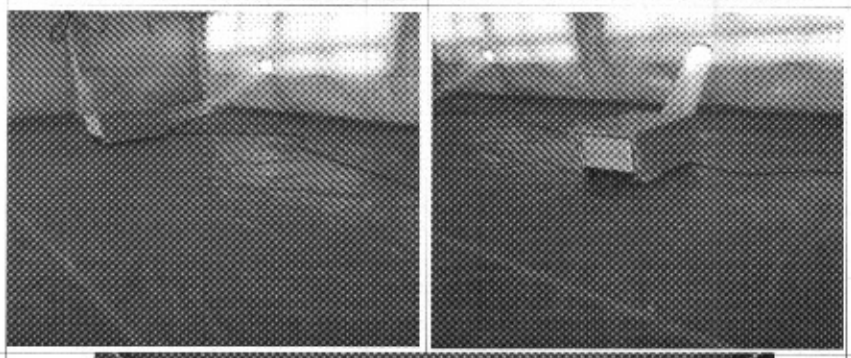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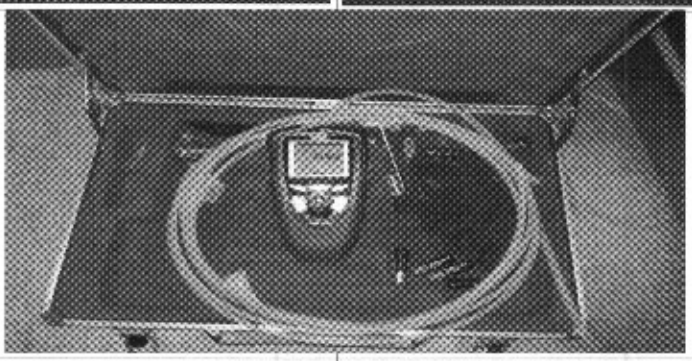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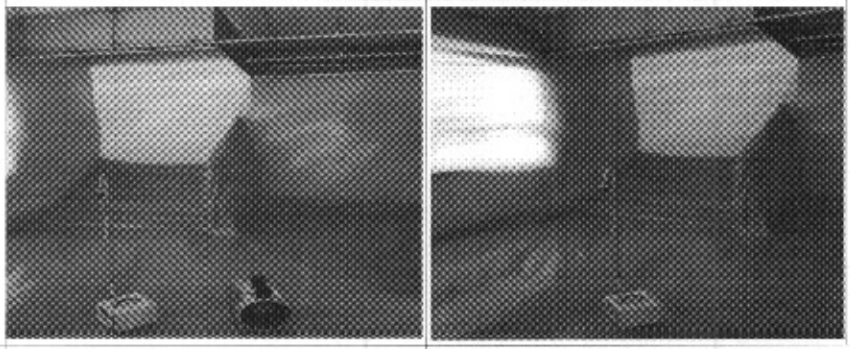
5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

2020년 01월 18일



연번 C200118-2

항 목	(실내) 석면 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			공간명 : #1~#5 급식실
측정시간	시작	pm 02:20	종료	pm 04:00
투입장비	종류	LX40A/5	수량	5ea
촬영대상	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(시료채취기,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)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			

구분	사진	사진설명
송풍기		작업일 (2020.01.18)
음압기		작업일 (2020.01.18)
음압 기록 장치		작업일 (2020.01.18)
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		작업일 (2020.01.18)
위치 :	#1~#5 급식실	분석결과(기준 0.01개/㎤ 이하) : (#1:0.002)(#2:0.000)(#3:0.002)(#4:0.001)(#5:0.003)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8-120014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 관 명	주식회사다른	
소 재 지	(12237)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16-2 (금곡동) 1층	
대표자성명	김학래	
지정사항	옹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8. 8. 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